

불법 복사,

그것은 타인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강경희 기자



그동안 출판계의 고질병이었던 불법복사·복제물 문제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개정된 ‘출판및인쇄진흥법’에서 불법복사·복제물에 대한 관계 법조문이 상당부분 개정, 명시화된 것이다. 대학교재의 불법 복사 문제 등의 심각한 저작권 침해 사실이 있었지만 관계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출판계는 불법복사·복제물 근절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금까지는 불법복사·복제물 고소가 친고죄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소송 제기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이나 권한을 위탁받은 단체(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등)가 관계 공무원과 동행했을 때 불법복사·복제 단속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전에는 모든 복제물을 단속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법에 따라 모든 복제물이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또 불법복사·복제물이 적발되었을 시 복사업체가 수거·폐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였다. 한편 이전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저작권자가 해당 복사업체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루한 재판과정으로 저작권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 이 조항은 일선 복사업체를 계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해석된다. 전국에 1,700여 개의 복사업체가 있지만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복사전송권을 계약한 업체는 900여 업체에 불과하다. 때문에 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저작권을 위탁받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정식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맺고 저작권 사용료를 내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홍보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물론 복사전송권을 계약한 경우라도 전권 복사(한 권을 통째로 복사하는 것)는 불가능하고 1인에 한하여 책의 5퍼센트 이하만을 복사할 수 있다.

불법복사·복제물에 대한 수거·폐기는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개 관계 공무원이 수행하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협조하고 있다. 법 개정 전에는 센터 직원의 신분이 불안정하여 복사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었다. 하지만 이제는 신분상으로 안정이 되어 앞으로 업무수행이 조금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불가피하게 공무원과 동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일에 한해 사후승인도 허용하고 있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김동현 과장은 ‘법이 바뀌어서 수거·폐기에 실질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은 시행초기단계인 만큼 법이 바뀐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때문에 홍보를 위해 라디오광고나 인터넷광고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개정의 당위에 앞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은 실정이다. 대학가 주변에서는 아직도 불법복사된 교재들이 학생들 사이에 유통되고 있다. 단속할 대상이 불분명한 대학도서관내 무인복사기 문제도 적지 않은 문제로 보인다. 무엇보다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위협하는 전권 복사는 범법행위라는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